

2003년 협약 이행의 새로운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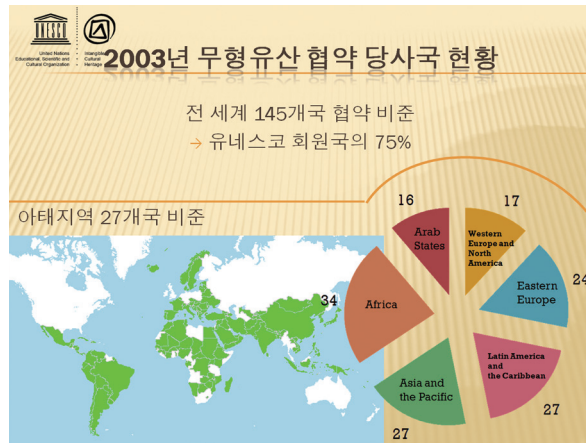
팀 커티스

유네스코방콕사무소 문화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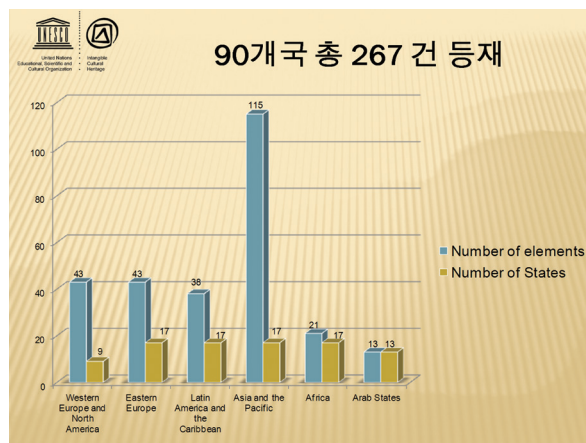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된 이후 첫 번째 정기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새로운 경향인지 단언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오늘 발표의 제목을 '2003년 협약 이행의 새로운 경향'으로 정했다. 이 발표를 통해 정기 보고 과정이 시작된 이후 유네스코가 보고받은 정보를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 드리고자 한다. 제1차 보고인 만큼, 모든 정보가 새로운 경향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부분도 있고, 기대와 일치한 부분도 있었다.

간단히 요약하면, 2003년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총 145개국으로 유네스코 총 회원국의 75%에 달하며, 이 중 아태지역 국가는 27개국이다. 여타 국제 조약과 비교해 보면 괄목할만한 성과이다. 예를 들어 세계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의 경우, 비슷한 수준의 비준을 얻어내기까지 21년이 걸렸다. 즉, 2003년 협약은 다른 국제 협약에 비해 비준속도가 월등히 빠르다고 할 수 있다.

1) 본 원고는 팀 커티스가 구술로 발표한 내용을 기록한 것임을 밝힌다.



당사국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이 발표에서 차후 자세히 다루게 되겠지만 바로 등재, 즉 무형문화유산 목록이다. 이 목록과 등재 체계에 대해서는 많은 찬반 논의가 있었다. 어떤 무형문화유산 항목을 포함 또는 제외시킬 것인가에 있어 각각의 주장에는 장단점이 있고, 모든 문제 제기가 나름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 보이는 이 흥미로운 표는 목록에 포함된 무형문화유산 항목의 지역별 분포를 나타낸다. 1972년 세계유산협약이 유럽 중심이라는 평을 들었던 것과는 반대로, 2003년 협약은 누가 뭐래도 아시아 중심이 아닌지 이삼열 사무총장님께 감히 여쭙보고 싶다. 표에 잘 나타나 있듯이, 아태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등재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질문이 다소 도발적이었던 것은 인정한다. 이 표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등재 체계에 관한 것이지 각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현황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는 낮은 등재비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5분 이상 아프리카에 체류해 본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이 지역에 무형문화유산이 풍부하지 않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아프리카는 매우 풍부한 무형문화유산을 자랑하지만, 정부 체계 및 관리뿐만 아니라 등재 신청서 준비, 유네스코 활동 참여 및 후속 조치 측면에서 역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기대와는 달리 이 목록은 전세계 무형문화유산 현황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목록의 긍정적인 역할이 분명히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설명하겠다.

아시다시피 2003년 협약에는 총 세 가지 목록,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Urgent Safeguarding List),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모범사례(Best Practices Register)가 있다. 이들 목록에서도 심각한 불균형 문제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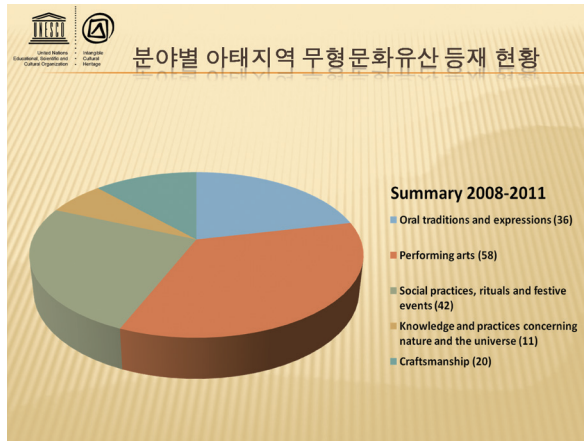
2008~2011 무형문화유산목록 등재 현황

목록	전 세계	아태지역
긴급보호목록	27	16
대표목록	232	106
모범사례목록	8	1
총 등재유산 수	267	123

* 2008년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 90건이 대표목록에 통합됨.

이 표에 나타난 수치들은 특히 우려할 만하다. 예를 들면, 긴급보호목록과 모범사례의 수치가 대표목록에 비해 현격히 낮다. 그 일부 원인은 2003년 협약 발효 시,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이 대표목록으로 자동 전환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협약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2003년 협약의 목적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표현 양식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불균형은 해소되어야 한다. 또, 2003년 협약이 어느 정도 독자적 존속이 가능한 무형문화유산의 단순 홍보보다

는 손실될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 보호에 초점을 맞추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아태지역의 예를 보면, 무형문화유산이 분야에 따라 어떻게 등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공연예술 분야가 무형문화유산 등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반면,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은 가장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분야인 사회적 관습, 의식 및 축제, 전통 공예 기술, 구전 전통 및 표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전반적으로 아태지역의 분야별 등재는 꽤 훌륭한 표본이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 분야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분류될 수 있는 교차적인 종목도 상당수 존재한다. 즉,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분야의 유산이 사회적 관습, 의식 및 축제로도 분류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분야가 늘 다른 분야와 확연히 구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로 인해 당사국들이 종목을 등재할 때, 두 세계의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21개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들은 올해 안으로 무형문화유산위원회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당사국이 매 6년마다 협약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2003년 협약의 요구사항 중 하나이다. 현재 제1차 보고가 진행 중인 관계로, 위원회에 제출된 정식 보고서뿐만 아니라 사무국이 사전 접수한 예비 보고서까지 포함해서 이를 토대로 취합한 내용을 말씀 드리고자 한다. 또, 지금까지 당사국들이 취한 조치와 등재된 무형문화유산 종목 중 일부 현황을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2003년 협약의 초점이 오로지 목록에만 맞춰져서는 안 된

다. 다행히도 종목 등재 외 분야에서도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국가들이 등재신청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기 보고에 따르면, 입법과 관련하여 상당수의 국가들이 무형문화유산 관련법 도입을 고려하거나 이미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법 제정을 위한 사전 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은 아닐지라도, 검토과정에는 이미 착수했다. 그 외 국가들도 자국 내 관련법이 이미 존재하거나, 또는 기존 문화유산법에 무형문화유산이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법을 개정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문화유산법 개정에 대한 당사국 내 논의가 촉발되기도 했다. 아태지역 몇몇 국가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법이 제정된 지 오래된 국가들도 있다. 이들 국가 중 일부에서도 법 개정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과거에는 관계 부처간 협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많은 국가들이 이제는 자국의 문화유산정책의 틀 안에 관련 정부 기관이나 무형문화유산 부서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국가들이 무형문화유산 공동체 기반 방식에 의거해 문화유산 정책의 지방 분권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가들에 따라서는 유사한 맥락에서 관련 예산의 지방 분권화를 고려 중이다.

일부 당사국들은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어떻게 정부의 역량 강화 및 교육이 유네스코가 상당한 노력을 집중하는 최우선과제가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차후 다시 설명 하겠다.

당사국들은 NGO의 참여에 대해서도 보고하고 있다. 예상대로 NGO의 참여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그런 면에서 NGO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블레이크 교수의 지적은 큰 의미가 있다. NGO가 무엇인지,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지는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폭넓은 분야의 수많은 단체들이 스스로를 NGO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사국들은 또한 기록의 지적재산권 문제 및 관련 자료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문제도 보고하고 있다. 이상이 지금까지 제도적 역량 문제와 관련해 정기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파악한 주요 경향이다.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은 2003년 협약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당사국들은 목록 작성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정기 보고서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목록작성은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분야이다. 목록작성을 위한 접근 방식은 매우 다양하며, 개인적으로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양한 접근 방식과 방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목록의 표준 양식을 수립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유네스코가 이러한 요청을 의도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세계문화

유산, 박물관 및 불법 거래의 경우에는 표준 양식을 각국 정부에 배포하였고, 이 방식이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에 있어 표준 양식의 배포는 실제 상황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표준 양식을 수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유로 유네스코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당사국들과 함께 목록 작성은 물론이고, 목록 착수 단계부터 명확한 개념 수립과 목록작성을 위한 틀을 정립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많은 국가들이 목록의 기준 또는 지표의 하나로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꼽았다는 점은 상당히 뿌듯하다. 이는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국가들마다 목록 갱신 빈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일부 국가들은 6개월 주기를, 또 다른 국가들은 1년, 2년, 5년 주기를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

블레이크 교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고 정기 보고에도 관련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공동체 참여가 전혀 새로운 관행임을 고려할 때,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공동체의 참여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보고가 있었지만, 참여 방식에 대한 보고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NGO 역시 각기 이질적인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언급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NGO나 협회가 어떻게 무형문화유산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결과 이들 단체의 역할도 점차 증대되는 추세이다.

정책 분야에서도 많은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되고, 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 프로그램이나, 앞서 언급했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의 지방 분권화 관련 정책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일부 국가들은 축제에 대한 재정 지원에 착수했고, 그 결과 축제가 무형문화유산 보호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정기 보고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향은 점차 늘고 있다. 박물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공동체 기반 박물관의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이 박물관 정책 및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현상도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화에 상당한 노력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디지털화에 따른 위험과 높은 비용으로 인해 막대한 자원 할당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 문서화, 디지털화가 일단 진행되면 다른 분야의 중요성을 떨어뜨리고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회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다. 일부 정기 보고서와 UN 개발 유관 기관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이 개발 전략이나 국가 개발 계획에서도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정확한 명칭 대신, 문화적 관습 등으로 일컬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무형문화유산이 개발 계획에까지 포함될 정도로 인식이 높아졌다는 점은 괄목할만하다. 과거에는 애초부터 이런 논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보고서에는 관광에 대한 언급도 꽤 있었다. 아시다시피 무형문화유산을 관광과 연결시키는 것의 이점과 위험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여기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다. 일부 국가들이 취한 또 다른 조치는 물리적 공간의 제공이다. 이는 무형문화유산도 물리적 공간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현재 아태지역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 또한 특히 관심을 끄는 사안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도농 이주로 인해 수많은 무형문화유산이 도시에서 연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면 고무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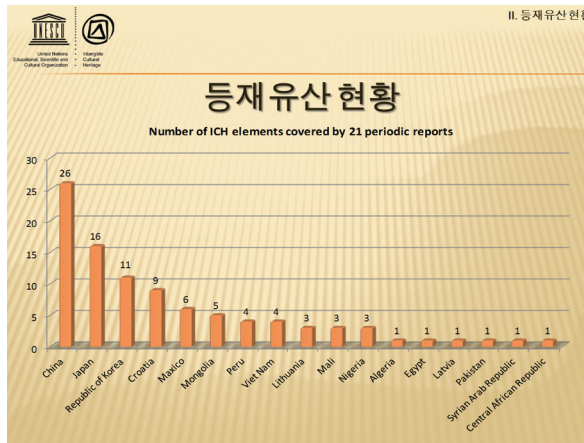
비공식적 전수체제의 구축, 공연전문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종목을 학교 교육에 통합한 국가들의 사례도 있다. 이는 특히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가치 제고라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훈련체계의 일부 사례로 정기 보고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핵심적 부분인 언어에 있어, 일부 국가들에서는 조기 모국어 교육 프로그램(early mother-tongue education programme)과 다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multilingual education programme)의 지지자들 간에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한 일들은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2003년 협약이 채택된 후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협약의 직접 시행이나 등재 이외의 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협력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각지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가 그 좋은 예이다. 그 외에도 공동 등재(trans-boundary nomination) 및 다국적 등재(multinational nomination), 국가간 연구 및 목록작성 방법 공유 등의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아태지역에는 총 4개의 카테고리 2기구가 설립돼 있다. 한국의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를 비롯해 중국, 일본, 이란에 각각 위치해있으며, 이란 센터의 경우, 현재 설립 막바지 단계에 있다. 중남미와 현재 건립 중인 동유럽에도 각각 카테고리 2기구가

있다.

이제 등재 종목으로 넘어가겠다. 등재 외에 정기 보고서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등재 종목이다. 등재 종목 현황 보고는 정기 보고의 요구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그래프는 21개 정기 보고서에서 다뤄진 등재 종목의 수를 나타낸다. 즉, 총 200개 이상인 등재 종목 전체가 반영된 그래프는 아니다. 이 그래프의 수치들은 보고서에 언급된 기간 동안 등재된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수를 나타내며, 다시 한번 아시아 국가들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겠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집단의 결속 및 가치 전수에 기여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다국적 등재가 이루어진 국가에서 이와 같은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간 교류의 기회가 없던 공동체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연결되고 있다. 유형 물질유산 종목 및 공간과 더 많은 연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 세계유산협약과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향후 통합되거나 최소한 그 공통부분이 늘어날 것이라는 블레이크 교수의 언급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논의는 유형과 무형의 뚜렷한 구분이 반드시 효과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축제나 종목의 등재가 경우에 따라 소수 집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킴으로써 사회 결속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등재의 긍정적 효과이다. 즉,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소수 집단의 자긍심이 고

취되고, 국가 구성원들과의 일체감도 높아진다. 최소한 일부 정기 보고서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그렇다.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이 보고서에서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생명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공동체 기반 사업은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정부, 유네스코, 전문가 모두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개입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무형문화유산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생명력을 지닐 때가 바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최상의 조건이 형성된 때인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및 보호를 위한 최상의 방안은 공동체가 스스로 그 역할을 해내는 것임을 정부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많은 국가들이 무형문화유산이 얼마나 활발히 전승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연행자 또는 언어 사용자 수를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전승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유용할 지도 모른다. 즉, 무형문화유산이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수되고 있는지 여부가 단순한 숫자보다 더 정확한 전승 지표가 될 것이다. 또한,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해당 무형문화유산에 활력과 자긍심을 불어넣는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보고된 위험 요소들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생활 방식의 변화, 세대 간 차이, 강력한 정규 교육제도 등의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가운데 특히 정규 교육 문제는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을 추구하는 유네스코를 진퇴양난에 빠지게 한다. 하지만 무형문화유산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공교육 제도 하에서 젊은 세대들은 과거 전통적으로 늘 접할 수 있었던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종목에 대한 접근이 배제되거나, 무형문화유산 교육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자, 심지어 모든 이를 위한 교육 패러다임 내에서도 논의 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몇몇 국가에서는 '지역 콘텐츠(local content)'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공동체 차원에서 교사가 교육 과정의 20%를 자체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목표를 위해, 무형문화유산을 학교 교육과정 및 계획에 통합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유산이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나 문화적 표현에 필수적인 공간과 관련 유

물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다시 말해,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 유형적 제약이 따르는 것이다. 공간이나 유물 그 자체는 물론이고, 이를 만들어 낼 지식이 부재하다는 보고가 점차 늘고 있다. 심지어 이런 공간이나 유물을 제작할 원재료를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며, 이런 문제들은 지속가능발전 의제와도 관련이 있다.

유네스코 등재와 함께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상업화 및 사생활 침해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한 공동체 내부 갈등과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런 상황이 불거진 몇몇 사례도 있었다.

당사국들은 목록의 궁극적 목표인 다른 공동체에 대한 자극제 역할과 소수 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심을 통한 문화 다양성 증진에 목록 등재가 어떻게 기여했는지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문화유산 등재 과정이 상기 목표 달성과 지역 공동체 참여 증진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보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 일이 산적해 있다.

그렇다면 제 1차 보고 이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은 무엇인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존 관례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및 법률을 마련하는 문제가 있다. 즉, 무형문화유산의 기록, 목록작성, 유네스코 등재 업무에 착수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규칙과 관례적 접근의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여전히 큰 의문이 남아있다.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국제적 차원의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지역 공동체만이 이 사안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사안에서만큼은 국제적 차원의 해결책이 가능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무형문화유산 기록을 둘러싼 지적재산권 문제가 대두된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내년부터 이 문제 해결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범위와 방법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2003년 협약은 당사국에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을 요구하고 있을 뿐,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2003년 협약이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목록 사용 및 해당 문서 배포에 관한 지적재산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또 야기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따라서 등재 및 목록작성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무형문화유산 전승 지원 및 유형적 측면의 통합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유네스코와 모든 협력 파트너들이 2003년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서 함께 힘써야 할 부분이다. 지금까지 다른 문제들보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덜한 도전과제들도 있다. 일례로 당사국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해 무형문화유산을 ‘도구화(instrumentalisation)’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싸고 표면적 대립이라기보다는 긴장에 가까운 갈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듯이, 이 문제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03년 협약의 취지는 갈등 야기가 아니라 평화 기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국유화는 2003년 협약의 진행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소의 하나이자, 적어도 지속적인 관심을 요하는 사안이다.

축제, 관광, 공연은 종종 무형문화유산의 탈맥락화(de-contextualisation)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유산의 위험요소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유네스코가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리기도 한다. 건드리는 것마다 황금이 되지만, 결국 그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 무형문화유산이 근본적으로 언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언어 문제를 좀 더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2003년 협약의 제 1차 정기 보고에 관한 유네스코의 피드백 일부를 간략히 개괄해 보았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2003년 협약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1972년 제정된 세계유산협약의 경우에도, 여전히 운영 방침에 대한 검토와 관련 개념 재정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역시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협약에 대해 다시 고민한다는 것은 협약이 살아 움직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20년 후에도 2003년 협약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해본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서 여전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기 때문이다.